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136
----------	----------

발의일자	2022. 11. 29.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의원

1. 제안 이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 1) 정책지원관 위임 법 조문 신설
- 2) 목적조항에 올 수 없는 약칭표현 삭제

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1)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지휘·감독사항 규정

다. 법령 재기재, 약칭표현 등 정비(안 제2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1. 25. ~ 11.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4) 성별영향평가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

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u>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u> ② <u>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u> 2. <u>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u>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